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은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가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 내 아동인권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Contents

I 아동인권전문가에 대한 이해

- ⋮ 1. 아동인권전문가 제도의 추진 배경 04
- ⋮ 2. 아동인권전문가 제도의 개요 05
- ⋮ 3. 아동인권전문가의 주요 업무 06

II 아동인권전문가를 위한 인권 이해

- ⋮ 1. 인간의 존엄 10
- ⋮ 2. 아동인권 19

III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을 위한 실무 정보

- ⋮ 1. 종사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46
- ⋮ 2. 아동용 권리지수 체크리스트 48
- ⋮ 3.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49
- ⋮ 4. 인권교육 활동 예시 50
- ⋮ 5.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추천 도서 56
- ⋮ 6.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추천 영화 57

IV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아동인권전문가

- ⋮ 1. 아동학대 예방 연간 사업계획 수립 64
 - ⋮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 67
 - ⋮ 3. 인권소통 촉진 및 작성사례 71
 - ⋮ 4.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 83
-
- ▶ 아동인권전문가 행정서식 84
 - ▶ 참고문헌 94

I

아동인권전문가에 대한 이해

- 1. 아동인권전문가 제도의 추진 배경
- 2. 아동인권전문가 제도의 개요
- 3. 아동인권전문가의 주요업무

아동인권전문가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시설 내 모니터링 및 소통촉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친화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아동인권 전문가 제도의 추진 배경



1)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종합계획(서울시 가족담당관-13731호, 2019.7.3.)

2) 추진배경

-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 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활성화 및 역량강화

3) 추진경과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종합계획 수립('19. 7.)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아동인권 전문가로 양성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 아동인권전문가 지정 및 교육 운영
 - '19년 지정 : 95명(생활시설)
 - '20년 지정 및 교육 : 363명(돌봄시설)
 - '21년 지정 129명(생활시설 14, 돌봄시설 115) 및 교육 180명(재지정자 포함)
 - '22년 교육 : 기본교육 414명, 심화교육 272명
-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가이드북 개발('21. 3.)
- 아동인권전문가 심화 교육 콘텐츠 제작('21. 12.)
- 아동인권전문가 컨설팅 실시('21~'22.)



4) 추진방향

- 전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 시설 종사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설장이 지정시까지 (임시)역할 수행
- 사례중심 컨설팅 및 심화교육 제공으로 아동인권전문가 역량 강화

2

아동인권전문가 제도의 개요



1) 개념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전담인력

2)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 아동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 시설 종사자(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돌봄교사, 돌봄 인력 등)로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해당시설 근무경력 1년 이상으로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이수(예정)자

3) 지정방법

- 시설 당 1인 지정
 - 시설장이 해당 시설 내 자격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선발
 -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이수 후 지정(지정 후 교육 이수 가능)·보고

1) 아동복지 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체계 확립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매해 11~12월)
 - ※ 예시) '22.11.~12.경에 '23년도 아동학대예방 계획 수립 완료
 - 시설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아동학대예방 계획 포함
 -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소관 자치구에 제출(매해 2월)
- 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교육 추진(연 1회 이상)
 - 아동 및 직원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후 교육결과 자치구 제출
 - 신고의무자 교육 외에 아동 및 직원 대상 아동인권/학대예방 교육 상시 운영
 - 전문강사 및 외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식 가능

2)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아동과의 소통 강화

- 아동인권증진 위한 인권소통 회의 실시(월 2회 이상)
 - 월 2회 이상 실시, 활동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보관, 자치구 결과보고(분기별)
 - 아동인권 관련 교육, 회의, 간담회, 행사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상시 모니터링 철저
- 시설별 여건에 맞는 아동인권전문가 역할 수행
 - 동료와 경험 공유, 신규·전입 직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및 활동 멘토링 등

3) 아동학대 의심징후 발견시 신속한 대응과 신고

-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및 안전 확보
 - 아동학대로 응급한 상황인 경우 우선 아동의 안전 및 신변 확보 후 신고
- 아동학대 사건이나 의심되는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112)
 - 피해(의심)아동을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분리 보호
 -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신고를 늦추지 않도록 주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제1항제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참고1

'23. 아동인권전문가 연간 활동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일정	
1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2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자치구 제출
3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 상시 모니터링 및 인권소통회의실적 자치구 제출
4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5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6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 인권소통회의실적 자치구 제출
	•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적 자치구 제출
7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8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9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 인권소통회의실적 자치구 제출
10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11월	• 다음년도 사업계획(안) 수립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12월	•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 인권소통회의실적 자치구 제출
	•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적 자치구 제출

※ 아동학대예방 교육은 시설 상황에 맞게 연회 이상 시행 후 상·하반기 중 1회 자치구 제출

※ 아동인권전문가 현황은 변동시마다 자치구 제출

※ 연간활동계획 예시는 64page참조

II

아동인권 전문가를 위한 인권 이해

1. 인간의 존엄

2. 아동인권

아동인권 전문가를 위한 인권 이해

1 인간의 존엄



1) 인간 존엄의 보장

인간의 존엄은 인권 기본 원칙의 하나로,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연령, 문화, 종교, 출신 민족, 피부색, 성별, 성적 정체성, 언어, 능력, 사회적 지위, 시민적 지위 또는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곧 인권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노력, 피와 땀으로 실현된 것이 인권이다. 인간은 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 하더라도 보나 나은 내일을 희망한다. 과거 노예제나 봉건제 사회에서 농노들의 현실에는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현실의 역사 속에서 인간 존엄성은 자주 부인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현재도 그렇지만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믿음, 즉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성에 근거한 각성과 투쟁으로 인권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구와 열망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믿음이 나타난 것이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는 개념은 17~18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에서 비롯됐지만 18세기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썼다. 인권을 표현하는 언어가 18세기 후반 등장했을 때는 이 권리들에 대한 정의가 그다지 명확하지도 않았다.

전쟁과 대량 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국제연합)이 설립되고, 1948년 유엔 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유엔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되면서 '인권'이란 말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개념어로 등장하게 됐다. 인류의 염원을 담은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인권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됐으며,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인권이란 말은 '사람의 권리'를 줄인 말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의미한다. 단어 자체는 한자로 된 개념어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다. 인권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면서 만들어진 경험적 개념인 것이다.



人權 = 人(사람 인) + 權(권세 권)
 human rights = human(인간) + rights(권리, 옳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 rights of man(인간의 권리)’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man이라는 단어가 인권이 마치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기에 지금은 Man 대신 Human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30년에 제작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하는 그림이다(정확하게는 7월혁명 기념). 이 그림은 독재 왕정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열망이 잘 드러나 있다. 혁명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혁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또한 희생은 동반한다. 이 그림에도 희생된 민중들과 혁명군의 모습이 보인다. 가운데 여성은 총검과 깃발을 들고 시체를 뛰어 넘어 분노에 찬 민중을 선도한다. 여신이 들고 있는 삼색기는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

여성의 왼편에는 하층계급으로 보이는 소년이 총을 들고 있고, 다른 편에는 중산층과 하층계급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있다. 그림 속의 민중들은 무엇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일까? 그들이 투쟁을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이념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2)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양상은 과거의 전쟁과 놀랍도록 많이 달라진다. 물론 이전에도 전쟁은 잔인했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인류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지만,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전쟁은 그 규모가 커지고 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동원되는 군대의 숫자가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류에게는 더욱 더 처참한 환경을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세계를 전장(戰場)으로 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끌어들이 엄청난 학살과 파괴가 자행됐던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욱 더 야만성이 강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과 민간인 사망 비율이 10대1 정도였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사망자 가운데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이 4대6으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전쟁에 휘말려 죽어갔다. 이렇게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 국가는 본질적 의무를 절감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헌장> 등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권의 유린, 인권 존중과 평화의 깊은 관계를 비추어 기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당시 58개국이었던 유엔의 회원국이 2년여 간의 기간에 걸쳐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했다. 이것이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된 이유다. 선언문의 내용은 전문과 본문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유권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이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들이 모여 인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밝힌 것이었다.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은 350개에 달하는 국가적·지역적 언어로 번역됐고, 가장 널리 알려져 인용되는 세계적인 인권 문서이자 국제 인권법의 뿌리로, 각종 국제협약과 선언의 모범이며 많은 나라의 법과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하고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만큼 남도 소중하며,
또 우리 모두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목소리를 누군가는 내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 모든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우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권을 가지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하는 원칙과 신념은 각자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래 국제사회가 이뤄온 인권의 증진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준 것이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나서서 말해 줄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인권 규범의 기본이다.”
-토마스 하머버그(1942~,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

QUIZ

Q1. <세계인권선언>이 제정·채택된 연도는?

- ① 1939년 ② 1927년 ③ 1943년 ④ 1948년

정답 :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다.

Q2. <세계인권선언>은 총 ___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건일까요?

- ① 20 ② 30 ③ 35 ④ 40

정답 : <세계인권선언>은 전문 및 인권의 일반 원칙,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체제·의무·제한의 메시지 등 총 네 가지의 영역에 30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Q3.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3) 인권의 특성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 국제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과 원칙이 만들어졌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All Human Right for All)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 보편성(Universality)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등의 단어를 자주 쓴다. 인권은 성, 인종, 연령,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보편성이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임에도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권을 그저 ‘사람의 권리’라고만 하면 사람의 범주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 곧 인권의 보호가 오히려 더 절실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돼야 한다.

인권이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각기 다른 어떤 이유로 사람을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시키거나 인권의 보호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견잡할 수 없는 사태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차이를 명분 삼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남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권에 있어서 보편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면서도 인권 현실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기도 한다.

• 불가분성(Indivisibility)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제3의 권리로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보통



자유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다.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이동하는가가 이 권리의 핵심일 것이다. 학교를 간다면 이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의 일부가 되고, 공장에 간다면 일할 권리의 일부가 된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는 모두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유권과 사회권의 권리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회권의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권의 행사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나 사찰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권리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권리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하나의 권리, 또는 몇 개의 권리만 보장된다고 해서 인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선별적으로 어떤 인권을 부인하거나, 인권 영역의 중요성에 서열을 매겨 특정 영역의 인권을 보다 더 중요하게 또는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권의 여러 목록은 모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중 단 하나의 결핍만 있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

•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인권의 주체는 사람이다. 인권은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상호 의존하는 관계다. 따라서 나의 권리는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도 사회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공적 책임, 연대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 인권의 진전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단 하나, 오로지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권과 기본권(basic rights)은 어떻게 다른가?

인권과 비슷한 말로 기본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며, 자연법적이고 생래적(生來的)인 권리인 반면, 기본권은 사람이 누리는 어떤 권리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임을 의미한다.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권리로 인권보다는 대체로 그 폭이 제한돼 있다.

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 작용의 영향(그것이 보호이든 제한이든)을 받는 권리다. 인권은 자체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나, 기본권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을 기본권으로만 부르고 인권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인권이 공동체적 가치, 연대성, 공공성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권 제한과 한계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궁극적으로 모든 이의 기본권이 더욱 잘 보장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권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은 본질적 인권을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법률로만’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한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피해가 공동체가 얻을 이익보다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 제한 이유 :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한 방법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제한
- 기본권 제한 한계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의무와 책임은 꼭 연결되는 것인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의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헌법> 제10조는 민주공화국이 명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보여준다. 특히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다. 인권에서 보편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또한 잣대이기도 하다. 인권이 모든 사람의 것일 때,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 또는 반(反) 인권이라 부른다.

(국가의 책무성) duty(의무)와 obligation(의무)

근대 사회계약에서 국민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오늘날 유엔의 9대 인권조약에서도 한결같이 obligate라는 동사를 사용해 ‘당사국’의 인권 실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약문의 주어는 당연히 당사국이지 개인이 아니다. 시민권 체제는 국민을 주권자로 설정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는 주권자의 인권 실현을 자기의 의무로 삼고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 충돌도 그 자체로서 바로 인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권 실현의 의무를 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존중’, 자유의 ‘보호’와 평등의 ‘증진’과 ‘실현’ 문제로 포섭할 때 비로소 인권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제 인권조약에서 동사 obligate와 duty를 분리해 쓴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 이를 분별하지 않고 모조리 ‘의무’로 번역하는 순간, 인권 실현의 의무가 (국가가 아닌) 모든 개인에게 있다는, 그래서 너도나도 서로 역지사지하며 존중과 배려로 인권 실현을 하자는 (인권 담론이 아닌) 인성 담론으로 빠지고 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국민 또는 시민은 스스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인권을 실현할 duty를 갖고 있다. 주권자인 스스로가 역량을 갖춤으로써 인권 실현을 위한 책임 있고 자율적인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의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내용도 원문을 확인하면 의무(obligation)가 아니라 사명(duty)임을 알 수 있다.

4) 현실의 문제 다시 인권입니다.

인권의 역할은 단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어떤 사람은 당장은 인권이 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인권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는 조금씩이나마 인권이 진전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인권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똑딱’ 하고 권리가 주어지는 적은 없었다. 인권을 누리는 것은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여성 참정권의 경우에도 157년의 오랜 세월 동안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여성들의 끈질긴 그리고 치열한 투쟁이 계속됐고, 한국의 역사에도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펼쳐 일어났던 민중의 투쟁을 시작으로 1919년의 3·1혁명, 1948년의 4·3항쟁, 1960년의 4·19혁명, 1980년의 5·18혁명, 1987년의 6월항쟁 등 숱한 항쟁과 그에 따른 희생이 있었다.

현실의 인권 문제는 기후위기, 환경위기, 양극화라는 불평등의 위기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가운데 나타난 중층적 재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인권의 말살이 결국 오늘날 재앙의 중첩화를 불러왔고,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 상황은 인류가 스스로 파멸의 경로에 접어들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또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뉴노멀은 다시 인권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우리는 필경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불편한 미래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재건해 옛날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십중팔구 사기꾼의 얘기밖에 안 됩니다.
가난과 불편을 각오하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더 가난하고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고통의 총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그 고통의 총량을 이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김훈(1948~, 소설가. 칼의노래, 남한산성 등)-

2 아동인권

1) 아동·청소년의 정의

아동의 정의는 여러 법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아동을 정의한다.

법령 기준	'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9세 이상 24세 미만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으로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에서 아동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연령 기준을 통일해 일관된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10대 소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직면하는 문제들은 갓난아이의 그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18세 미만의 자”라는 기준이 매우 다채롭고 동질적이지 않은 사회적 가정이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할 때는 각 맥락 속에서 그 목표 집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아동은 오랫동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의 소유로 여겨지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 왔다. 이 때문에 아동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동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라도 부모나 어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했었다. 가부장적 관점이 지배해 온 전통사회에서 아동은 성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됐으며 기독교적 서구 전통사회에서도 아동은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사악한 존재로 엄격하게 훈련받고 길들여져야 할 수동적 존재로 인식됐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윤리에 따라 장유유서의 관계로 이해됐고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값싼 노동력의 공급자로 인식됐다.

• 아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아동 권리에 대해 관심이 시작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많이 생기면서부터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dignity)을 지니며, 그 존엄성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아동은 더 이상 성인의 부속물이 아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더 이상 불가침한 것이 아니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아동은 잠재적 능력이 있고 자신만의 관심과 욕구, 중요한 일들이 있으며,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있으므로 아동의 견해, 경험, 희망은 어른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은 시민으로서 위치가 유예된 사람이 아니라 어른과 다름없는 한 인간이다. 이에 따라 자기 결정권을 부모나 교사, 사회에 위임한 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아동 권리란 아동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아동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

인권이라면 성인이든 아동이든 관계없이 누려야 하는데, 이를 아동 인권의 속성 중 ‘보편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동만이 지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아동 인권의 속성 중 ‘특수성’이라고 한다.

아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어른과 같이 자유롭게 술, 담배를 하는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성장한다는 점 때문에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많은 사회에서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교육받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아동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향유해야 함
아동 인권의 특수성	아동만이 지니는 특수한 상황 일체를 말함

아동기는 출생으로부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사춘기 및 청소년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성장 기간이다. 이 시기에 잘 보호받고 양육되면 건강과 잠재력을 증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주어진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아동은 일반적인 발달단계가 있다. 그러나 그 발달단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성인은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현재 상태를 존중하며, 나아가 그들의 삶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대해 성인보다 민감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동기의 모든 경험은 계속 누적되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분명 성격과 자존감, 인지 능력, 대인관계 등 광범위한 범위의 개인 역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아동기의 경험과 기억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

“아동의 미성숙은 부족함(lack)이나 결핍이 아니고 성장하는 힘(Power to Grow)이다.”

- 존 듀이(1859~1952, 아동중심교육, 미국의 교육학자)-

“아이들은 내면에 자신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집중력을 갖추고 있다.”

- 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 이탈리아 교육학자)-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이란 눈으로 보이는 아동의 능력만이 아니라 아동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들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Check

아동에 대한 나의 생각은?

- 아동은 성인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양육자로서 아이의 비밀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자가 사생활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아동이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 나는 아동과 성인의 인권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기

-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소파 방정환
만약, 한 개라도 체크 항목이 있다면 나는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아동은 사생활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의견존중의 권리 등이 있으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특수성을 가진 보편적인 한 주체로 존중합시다.



3)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이해

•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란

인간의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이 있는데, 국제사회는 왜 아동권리협약을 별도로 규정했을까?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즉 국제사회는 생애주기 중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인 아동기에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 쉽게 학대받거나 방임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논의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1990년 9월에 발효된 인권조약이다.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협약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합의된 유엔 인권조약이다(2019년 기준 유엔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합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아동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권리를 지닌 한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에 합의한 국가는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 실현할 의무가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전문

본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서 선언한 원칙에 따라 인류의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며, 유엔 체제하의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유엔 헌장에서 재확인하고, 충분한 자유 안에서 사회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하고,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위 선언 및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하며, 유엔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창한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하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웰빙(well-being)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확신하며, 온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정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유엔헌장이 선언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 받아야 함을 고려한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및 내용

아동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를 총망라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문(preamble)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前文) : 아동 권리의 기본 이념과 가치, 배경
제1부(1~41조) :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규정
제2부(42~45조) : 아동 권리 이행과 모니터링 관련 조항
제3부(46~54조) : 부칙(유엔 아동권리협약 서명 및 비준 절차)

54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1조에서 제40조는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명권, 국적권, 신분 보존권, 의사 표시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의 시민적 권리, 가족 동거권, 양육받을 권리, 건강·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 아동의 보호, 문화활동권 등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으며,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제41조는 협약의 법적인 효력을 설명하고 있다. 제42~45조는 협약의 홍보와 이행, 제46~54조는 협약의 비준에 관한 조항들이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아동 권리는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개의 기본권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든 권리의 가치는 동등하며, 아동의 삶에 있어 똑같이 중요하므로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어떤 권리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

기본권	내용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등 ex) 깨끗한 공기와 음식, 안전한 장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ex) 괴롭힘, 정서적 혹은 성적 학대, 노동, 전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등 ex) 교육받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
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ex) 생각, 양심, 종교적 자유, 의견을 갖고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할 권리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일반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비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
<p>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모든 조치나 정책이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함을 원칙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논함에 있어 이 원칙은 '언제나' 고려돼야 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p> <p>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 - 모든 아동에게 적용해야 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에 큰 비중을 둔다. - 이익에 대한 요인과 영향에 대한 상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아동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p>아동의 권리가 인권과 구별돼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아동은 생애 발달 시기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바로 이러한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이 된다.</p>
비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p>아동의 권리를 논함에 있어 인종, 국적, 종교 등의 어떠한 조건에 따른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권리의 대상인 아동이라는 그 조건만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부과된 아동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p>	<p>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것이다.</p> <p>아동의 권리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회, 성인 집단들이 이를 인정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p>



• 선택 의정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3개 선택 의정서는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아동의 개인 청원권에 관한 선택 의정서>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제1 선택의정서 및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아동의 개인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가입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부터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아동 음란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해 아동 인신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할 것, 사회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2년 2월 1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했으며, 전쟁이나 군사 무력 분쟁에 아동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적군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 청원권은 2014년 4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아동이 심각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이 직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자신의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는 협약 내용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검토해 해당 국가가 얼마나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심의하고, 추가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권고사항을 작성해 해당 국가에 전달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제1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2000년에 제2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08년에 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했다. 5·6차 통합보고서는 2017년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2019년 9월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제5~6차 국가보고서

<p>일반 이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적절한 자원 할당 - 아동을 위한 적절한 자원 할당 및 지역격차 감소, 예산 수립 과정에 아동 참여 강화 - 아동 관련 통합 자료 수집체계 구축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역량 강화 -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 및 인권교육 보장,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무적 훈련 제공 - ODA 규모 확대,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아동 권리를 우선순위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 수립
<p>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보육시설·교육·보건·복지·여가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접근 보장 -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 영향평가제도 적용 확장 - 아동 최선의 이익 실천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 가슴기살균제 구제 및 배상, 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미세먼지와 석면 등 모니터링 - 학업 성과와 관계없이 교내 의견 표현의 기회 보장
<p>시민적 권리와 자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및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베이비박스 금지 -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 개정, 선거 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법과 현실에서 보장
<p>아동에 대한 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벌 명시적 금지, 폭력과 학대 신고 장려, 사건 수사에 성인지적 관점 고려, 관련 시설 및 전문가 확대, 이주·장애 아동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접근 보장,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 할당 - 온라인 그루밍 형사범죄 규정, 미성년자 의제기간 연령 상향 -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 모든 아동은 피해자로 명시하여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 피해자 처우 -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예외 없는 조혼 금지
<p>가정환경 및 대안양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지원의 동등한 접근 보장 -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 및 이용 촉진, 면접 교섭센터 설치 확대, 양육비 이행 촉진, 한부모 가족 차별 근절 - 가정 기반 양육 지원 및 촉진, 시설보호 단계적 폐지, 아동의 가출예방 및 가출아동보호 강화,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마련,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 지원 강화 - 미혼모에 대한 편견 근절, 입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보장 - 입양 아동 사후관리 강화 및 친생부모 관련 정보접근권 보장,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 수용자 자녀의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 및 아동의 부모 접근권 보장



<p>장애·기초 보건과 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장애 아동 지원, 학교 기반시설 개선 및 특수교사 확보 등 통합교육 제공,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 경제적 취약계층 및 이주 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 강화 -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 강화 - 학교 내 성교육 및 임신·출산 지원 등 청소년 임신 대책 마련 - 보편적 아동수당 보장, 빈곤 아동 현황 조사 및 계획 수립 - 아동 주거 빈곤
<p>교육·여가 ·문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의존도 경감 및 제재 강화, 모든 아동의 의무교육 및 일반 학교 접근성 보장, 장애 아동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 - 공교육 정상화 노력, 교사 훈련 강화, 청소년 임신 및 HIV/AIDS 예방,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 제공, 학교 밖 아동 지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 사이버 괴롭힘 포함 집단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치 강화, 아동의 놀이·여가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 충분한 시간과 연령에 적합한 안전한 시설 보장
<p>특별 보호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아동 구금 금지 및 가족 재결합 문제에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 개발, 이주 아동의 동등한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 보장, 이주 아동 권리 보호법 제정,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 실시, 자료수집 및 예산 할당 - 적절한 체계 수립을 통한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 강화 - 인신매매 정의 개정, 관련 공무원 대상 훈련, 전담조직 구성, 피해아동 보호 및 서비스 지원 강화 - 아동사법 전문법원 설립 및 관련 전문가 대상 교육훈련, 형사책임 최저연령 만 14세 유지, 공정한 재판 및 법정 후견인 참여 보장, 언론보도 지침 수립, 우범소년 폐지,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비구금형 촉진, 구금 실태 개선, 성인과 분리 수용 보장, 근신실 및 이송조치 폐지, 아동에 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 규제, HIV 정보 등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 보호
<p>OPSC, OPAC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SC에 명시된 모든 활동을 국내 형사법하에 완전히 포괄 - 만 18세 미만 아동 징집 및 적대행위 가담 금지 - 분쟁 지역 출신 난민 신청 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신체적·심리적 지원 강화 - 사관학교 교육과정예 OPAC 조항 반영 - OPIC 기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기준, 아세안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SC: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대한 선택의정서 · OPAC: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OPOC: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 권리 주체와 의무이행자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조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지만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 아동,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 모든 사회가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최근 들어 아동과 관련된 직무자에게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은 아동 또한 권리 주체라는 인식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 교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책무를 실현하는 의무이행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탁받아 각 기관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책임지기도 한다. 위 종사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종사자로서 아동 인권 실현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인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존재인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셋째, 종사자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기술, 지식, 태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종사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아동이 하는 모든 경험을 인권적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

결국 의무이행자로서의 종사자는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의무이행자로서 종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 자질도 요구되지만 구조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 한 양육 시설에서 아동인권이 더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한 권리주체자이다. 권리주체자로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7번에서 아동과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가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많은 경우 종사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열악한 직무환경은 종사자의 직무 지속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것은 잦은 이직으로 연결되어 결국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피로감은 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아동의 인권과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종사자의 인권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종사자에게 아동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아동과 관련 종사자가 아동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은 성인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인권침해 사안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아동의 참여는 왜 중요한가?

아동은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지닌 존재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바꾸고 싶은 것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방법, 또는 대안을 찾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험은 주체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의 참여 및 견해 표현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그렇다면 아동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아동이 직접 해결하는 것은 왜 중요하고 가치가 있을까? 아동이 실제로 겪는 문제는 현재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아동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아동은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표현해야 한다.

진정한 ‘아동 참여 실현’은 아동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아동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 변화에 반영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과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이를 말로 표현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돼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기회가 국내 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 런디의 참여모델 네 가지 핵심 요소

Space 공간	아동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기회의 장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서 아동은 본인의 견해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Voice 목소리	아동의 견해를 의미한다. 아동이 스스로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udience 청자	아동이 표현한 견해를 듣는 존재(개인 혹은 기관)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이 표현한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돼 전달됐을 때 비로소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Influence 영향력	아동의 견해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아동의 견해를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적절한 행동을 통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너네 그러다 나중에 뭐 해먹고 살래? 그래... 제발 말 좀 들어.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일이야!” 이 말들은 정말, 아동을 위한 말일까요? 정말, 공부만 잘하면 인생을 잘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공부만 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말하면 “밥 다 먹었으면 빨리 들어가서 시험공부해라”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은 오로지 내가 학업 성적이 좋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 하십니다. 이 때 부모는 행복하지만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동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권교육은 실천적 기술의 발달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

아동의 권리이니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인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더욱 장려하는 첫걸음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있을 때 아동의 권리가 더 잘 존중될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 침해를 줄일 수 있다.

인권의 가치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한 일을 하는 성인은 어떤 행동이 수용 가능하고,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 경험 또는 가치에 의존하게 된다. 인권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들을 참고해 언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지를 평가하는 명확한 틀을 제공해 준다.

자존감 발달과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깨닫는 순간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다. 또한 아동은 자신들이 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가치가 있으며 집단, 가족, 학교, 공동체의 삶에 자신이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권리에 대해 배움으로써 아동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은 비판적 성찰과 아동의 책임감 강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행동을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인권교육은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인권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하도록 어떻게 행동을 고쳐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 결과, 아동은 존중, 협력, 포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더 잘 실천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알고’ ‘행동할’ 것을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자크 들로레스(Delores, Jacques) 외, 학습: 내면의 보물(21세기 국제 교육위원회에서 유엔ESCO에 제출한 보고서)(유엔ESCO)

• 아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와 제29조, 일반논평 제1번을 통해 아동의 교육 목적은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등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해 인권교육은 교육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2조

또한 유엔 차원의 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인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제1차 단계의 핵심 목표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설정하고, 아동과 교사·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의 교육방침 수립과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4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도 아동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에 대한 필수교육 제공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수교육’도 아동의 인권 실현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서 인권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가정과 그 밖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아주 특별하고 민감한 시기다.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를 조율하며 상호 소통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다면적 원인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아동·청소년기는 비차별과 인권감수성 형성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자인 부모와 교사의 아동인권 옹호 역량은 중요하다. 아동이 스스로 권리 주체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시에 나와 타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경험하는 존중감과 인권 침해 정도는 아동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일수록 인권 존중의 경험이 낮고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았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효능감도 낮게 나타났



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돌봄과 양육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시각에 적합한 의사소통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더불어 그 아동의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성장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바쁜 근무 여건 속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이론 중심의 유사 교육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아동의 일상과 관련된 현장의 이슈와 사례를 이용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고, 자연스럽게 아동인권의 틀 안에서 아이들의 삶과 현장을 살펴보고 현실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4)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란 임직원, 기관 운영, 사업 수행 등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관 차원의 책임을 의미한다. 즉, “Do No Harm(해를 입히지 않음)” 원칙은 아동을 모든 피해 및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기관에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을 의미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종합적 접근은 기관(직원, 사업 수행 및 기관 운영)이 아동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인과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제시한다. 기관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관의 전략과 거버넌스에 있어 필수적이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더 많이 예측할수록 더 많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당신의 기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에 어떤 위험이 잠재돼 있는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은 구호 및 개발 단체들의 연대체인 'Keeping Children Safe'에서 2003년 제작함. 2016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번역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Child Safeguarding) 기준과 이행방법」에서 내용을 발췌함

-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돼야 하는가?
- 기관 내에서 아동 관련 세이프가드를 위한 이슈를 보고받고 대응하며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인력으로 누가 적절할 것인가?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기관에서 직원 개인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며, 문제 발생시 대처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하는가?
- 실천약속에 근거해 모든 직원이 아동과 함께 일함에 있어 적절한 행동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아동에게 안전한 인력을 채용할 것인가?

그러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절차가 견고하게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는 아동에 대한 폭력, 착취, 학대에 맞서기 위한 예방과 대응을 의미하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Child Safeguarding)’는 ‘아동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책임과 제도적인 장치를 말한다.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Child Safeguarding)’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아동에게 ‘위해(harm)’는 무엇인가?

신체적 학대: 타인, 즉 성인 및 아동 등이 가하는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피해를 말한다. 때리기, 흔들기, 독극물 먹이기, 물에 빠트리기, 화상 입히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 질병에 대한 증상을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질병을 야기하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다.

성적 학대: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동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 구강성교, 삽입 또는 자위, 키스, 문지르거나 만지는 등 삽입하지 않고 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아동을 참여시키고 이를 보게 하는 행위, 아동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아동 성 착취: 돈, 선물, 식량, 숙소, 보살핌, 지위, 또는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성행위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성적 학대의 유형을 말한다. 보통 아동과 친해지거나 신뢰를 얻음으로써 아동을 조종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학대 관계는 피해자의 권한이 제한되는 불공정한 권력 관계와 관련이 있다. 즉, 아동과 성인 간의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일지라도 일종의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아동 성 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연장자인 가해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금전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롯해 가해자가 또래의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강요해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때때로 범죄조직의 영향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어린 피해자들을 인신매매해 다양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가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방임과 보호 태만: 방임과 보호 태만은 아동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진 자원을 감안하되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의 건강,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미칠 수 있다. 방임과 보호 태만은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영양, 주거, 안전한 삶과 일의 터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임신 기간 중 마약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등 모성 방임과 장애아에 대한 방임과 학대도 포함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말한다. 행동의 제지, 비하, 모욕, 괴롭힘(사이버상의 괴롭힘 포함)과 협박, 겁주기, 차별, 조롱 또는 그 밖의 비신체적인 형태의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대응을 포함한다.

상업적 착취: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현장 또는 다른 활동에서 아동을 착취해 아동이 신체·정신적 건강과 교육, 도덕·사회 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아동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한 기관을 만들기 위한 4단계

기준1
정책

기관은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정책 수립 기획하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이해한다.
- 기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절차 가운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인력, 채용 절차에 선별하는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파악한다.
- 아동의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강화한다.
- 기관 내 주요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고 누가 정책의 수립, 이행에 포함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한다.

문서로 작성

-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기관을 위한 실천 약속을 만든다.
* 54쪽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기관을 위한 실천 약속> 만들기 활동을 통해 실천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정책의 승인

- 경영진의 승인

정책 발간

- 기관의 홈페이지, 회의실 등 공적 장소에 약속을 나타내는 포스터(행동강령) 전시

기준2
인력

기관은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책임과 기대를 부여하고 그들이 방침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도와야 한다.

- 주요 직원들을 '아동 세이프가드 담당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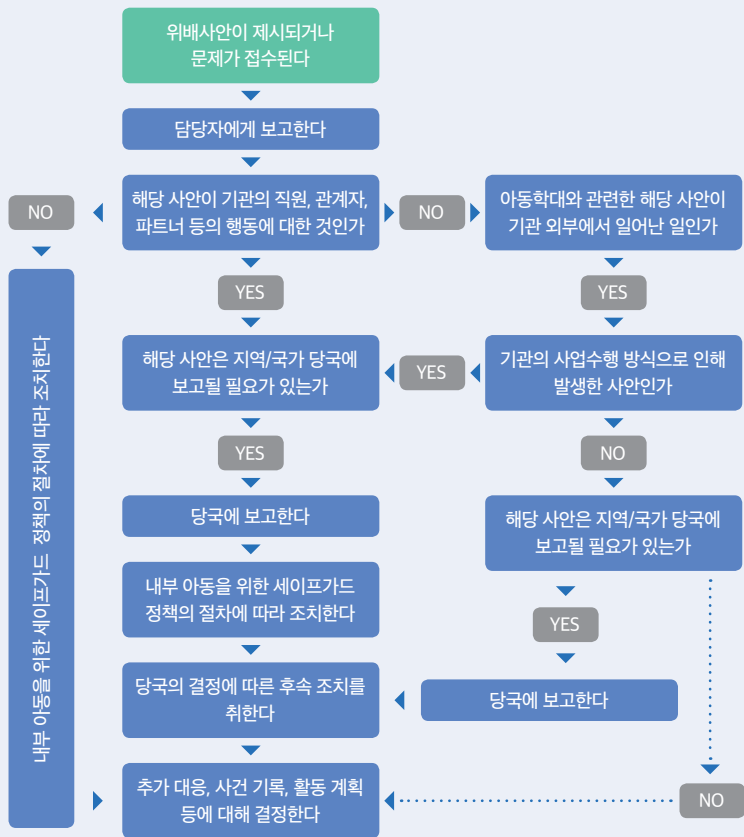


기준 3
절차

- 성인 및 또래 아동이 아동에게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과 취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파트너, 지역사회,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신입 직원은 업무를 시작할 때 기관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들은 기관이 규정한 학대의 정의가 담긴 정책을 숙지하게 한다.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보고 절차의 예시

이 절차는 '안전한 기관을 만들기'를 위해 Keeping Children Safe(KCS)에 의해 제작된 보고 절차의 예시이며, 기관실정에 맞게 활용하신다면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4 책무성

기관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절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주요 이해당사자(기관 경영진, 관련된 외부 또는 독립된 조직)에게 정책 이행의 성과, 실적, 교훈 등을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기관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 실제 사례로부터의 교훈은 기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 검토와 개정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 정책과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3년마다 외부 평가·감사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한다.

생각해 보기

- 아동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는 누구에게 어떻게 있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우리 사회가 아동을 대하는 모습에서 아동인권과 관련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1) 출생신고 제도에서 아동인권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시2) 노키즈 존이 계속 늘어만 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토론해 봅시다.



5) 인권감수성 up

인권감수성이라는 말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던 용어였으나 인권 담론의 확장과 인권교육의 확산으로 지금은 널리 쓰이게 됐다. 인권 감수성을 거칠게 정의하자면, '인권 문제 또는 그 징후를 감지하고 그에 응답하는 민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변화(연민, 분노, 무관심 등)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사건의 원인에 따라 대상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에서부터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노,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함께 일어난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 그 순간은 기존의 삶을 어떤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도 한다. 기억으로 저장하든,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전하든, 관련 문제를 더 탐구하든, 사건의 현장으로 달려가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든, 자기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때의 '나'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나'가 된다. 이처럼 인권감수성은 '감수성'이라는 사전적 정의처럼 외부 세계의 자극을 그저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마음이 움직이며 그에 응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배려에서 상호 존중으로

“인권은 ○○이다”라는 낱말놀이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배려’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배려는 사전적으로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은 훌륭한 인성의 덕목이다. 하지만 인권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인권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인간’을 전제로 한다. 인권은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로 서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과 상호의존성을 원칙으로 하는 연대의 힘에 의해 발전해 왔다. ‘배려’는 권력과 힘의 차이, 위계에게 발생한다. 도울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구분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동등한 인간 사이의 연대를 전제로 하지만 배려는 차등적 권력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희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배려는 인격적 성숙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동등한 권리 사이에 작용하는 인권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배려는 개인과 개인 간에 작동하는 원리지만 인권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보장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공적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인권에서 배려가 강조되다 보면 사회적 책무나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자칫 개인의 노력이나 희생에 떠넘겨질 수도 있다.

• ‘말’에서부터 인권이 시작되요

오랫동안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나 정체성의 언어를 구성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오래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구성하는 경험을 하기 어렵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말이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차별과 편견이 담긴 말들로 타자화되다가 당사자의 의식이 반영된 언어들로 바뀌어 가는데, 이는 인권의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어를 스스로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장님, 소경, 맹인, 봉사 등의 호칭은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통칭되는 말이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에 따라 말의 쓰임이나 대우가 달랐다. 1992년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큰사전>은 ‘장님’을 소경의 높임말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 엮은 <연세 한국어사전>의 풀이에는 단순히 ‘눈이 먼 사람’으로 설명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8년 <표준국어대사전>을 냈는데, 여기에서 ‘장님’은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규정된다. 과거 우리말 사전들이 ‘장님’이란 단어를 두고 ‘높임말’에서부터 ‘낮잡아 이르는 말’까지 양극단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애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이렇게 장애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의 당사자로서 장애인들 스스로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고, 인권의 주체라는 점이다. 한때 일부에서 ‘장애우’라는 호칭을 장애인을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거부되며 오히려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최근 일상의 대화에서 ‘요린이’ ‘주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키는 교육용어다. 1920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 몇 년 전부터 어떤 한 분야의 초보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린이’를 붙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몰랐던 사람들도 방송과 sns를 통해 신조어라며 큰 불편감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해 미숙한 단계에서 ‘~린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한다면 어린이는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이 은연중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다. 어린이는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다. 이 표현은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 ‘노 키즈 존’은 차별이다?

아이들과 음식점에 갔을 때 혹은 미술관에 갔을 때 ‘미술관은 아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면 같이 간 아동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노키즈 존’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A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향후 A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노키즈존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집단이나 성별, 장애 유무, 나이 등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전한 사람만을 선별해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혐오와 차별의 바탕이다. 상황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언젠가는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사회에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넬슨 만델라(1918-2013, 前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인권전문가)-

III

아동인권 전문가 활동을 위한 실무 정보

1. 종사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2. 아동용 권리지수 체크리스트
3.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4. 인권교육 활동 예시
5.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추천 도서
6.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추천 영화

아동인권 전문가 활동을 위한 실무 정보

1 종사자용 아동권리자가 체크리스트

• • •

이 체크리스트는 보육종사자들이 아동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대해 종사자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 정기적 사용을 권장합니다.

- 사용주기: 근무개시 1주일 이내 필수, 이후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연 2회) 사용 권장

항 목	전혀 없음	1회	2회 이상	거의 매일
1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예) 욕과 나쁜 말 : '돼지야, 이 못생긴 게, 멍청아, 바보, 나가 죽어라'				
2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예)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예) '시키는데로 하지 않으면 간식 없어!'				
4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예) 아동에게 종사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종사자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 도구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6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둔 적이 있다.				
7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향을 지른 적이 있다. 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8 아동의 신체를 때린 적이 있다. 예) 맨손이나 사랑의 매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행위				



항목	전혀 없음	1회	2회 이상	거의 매일
9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예) 아동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행위, 아동의 머리카락이나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드는 행위,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등				
10 놀이 시간에 아이들 간의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11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이 한 적이 있다. 예)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지 않거나, 식사 때가 되어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				
12 아동을 위험 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예)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등				
13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예) 몸이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행위 등				
14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예) 옷을 갈아입힐 때 사람들 앞에서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행위 등				
15 음란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결과에 따른 자가 검진

분류	세부내용
없다	당신은 아동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 있다에 체크	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일부 수정(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067)

2

아동용 권리지수 체크리스트



아동인권소통회의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나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나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사람(보호자, 선생님,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에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개인의 특성이나 학업 성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나요?					
정기적이고 충분한 신체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나요?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가정 및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있나요?					
원하지 않는 서약이나 약속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할 수 있나요?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활동할 수 있나요?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나 사생활의 내용이 보호되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가요?					
양육자, 보호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나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영양이 균형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받고 있나요?					
소질과 적성에 적절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나요?					
충분하고 다양한 휴식과 놀이의 시간 및 경험을 제공받고 있나요?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과도하게 비난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나요?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나요?					

* 선생님들을 위한 인권수업 자료-3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X 에듀 콜라 X 국가인권위원회]



3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 국가인권위원회의 종사자 인권교육 활동프로그램으로 5개의 기본프로그램과 3개의 심화활동으로 구성됨.
- 4-5명의 모둠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권장함.
- 아동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활용 가능

구분	활동명	목표
기본 프로그램	지금, 여기, 나.	1) 종사자는 아동과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2) 종사자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3)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인권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를 형성한다.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1) 종사자는 아동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아동을 인식한다. 2) 아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3)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진화하는 능력(evolutionary capacity)에 대해 이해한다. 4) 아동의 생태 체계를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인식한다.
	나는야, 인권 전문가?	1) 종사자는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검한다. 2)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성을 안다.
	아동 최선의 이익과 종사자의 노동권	1) 종사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아동인권과 종사자 인권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해한다.
	아동인권 이해하기	1)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한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심화 활동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에 준거해 지금의 우리 시설을 점검한다. 2) 점검 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에 기반해 문제해결 및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3)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의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하고 재설정한다.
	Six Questions	1) 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논하고 분석한다. 2) 종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3)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성찰하고,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 아동인권 옹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모색한다.
심화 활동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1) 아동인권에 기반해 우리 시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2) 양육에 있어 주양육자들 간의 협력과 합의된 약속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일관된 양육 체계를 세우고 실현하는 데 종사자들 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참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세부 활동 참고(P183~239)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068702&filename=in_12112061417009344591_2022011715.pdf

대상	세부내용
아동 · 성인	<p>인권 감수성 up [영화] <나는보리, Bori, 2020> 감독: 김진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를 통해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안다. -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을 이해하고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영화 감상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보리> 영화의 포스터 몇 장을 학생에게 보여준다. - 학생들은 포스터에 나온 정보를 통해 내용을 예측해 본다. • 영화 감상 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등 다양한 매체 속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 나 자신이 스스로를 인간으로서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사람들 간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례를 통해 그런 행동이나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 아동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의하고 제안한다. - 연령 및 외모 이슈, 가족 형태, 장애와 관련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 학생들에게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인권보장 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 영화에 나오는 '가족, 소원'이라는 낱말을 연결지어 '나의 소원'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내가 겪은 차별: 보리네 가족이 겪는 작은 차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 학생들 스스로가 해 본 혹은 받아 본 차별이 있었는지 적어본다. - 장애를 장애가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 영화 속 보리 동생 정우는 축구를 잘하지만, 장애로 인해 선수반에 가지 못한다. 정우의 소원인 축구선수의 꿈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 실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나는 보리> 작품 외에 장애를 주제로 한 몇 개의 영화를 추천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과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일회성 교육을 넘어 동료 교사들과 함께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p>* 영화 활용 인권수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차승민 선생님의 글 <영화로 돌아보는 인권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대상	세부내용
성인	<p>‘레미제라블’로 알아보는 인권의 역할 [도서]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는 무엇인가? - ‘인권’이 지켜지는 것은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켜지는 것임을 안다. • 내용 <p>굶주리는 일곱 조각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전과 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박해를 받던 장발장은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자신이 훔친 은식기에 은촛대까지 선물로 준 미리엘 주교에게 감명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장발장은 세상을 새롭게 살아 보자고 마음먹게 됐고, 가석방 선서를 어기면서 이름을 마드렌느로 바꾸어 살아간다.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시장이 되고, 공장 주인이 되면서 성공한다.</p> <p>팡틴은 비록 미혼모(비혼모)였지만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린 코제트의 양육비를 부담하면서도 그럭저럭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사람(misérable)이 된다.</p> <p>팡틴은 당장 먹을 것도 없는 데다 코제트의 양육비와 약값을 마련해야 했다. 집에 있는 세간을 팔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이를 뽑아 팔고, 마침내 몸을 파는 성매매에까지 나서게 된다. 그러다 한 ‘시민’(투표권이 있는 자산계급)의 장난질에 걸려 경찰관 자베르에게 체포됐다가 장발장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된다. 장발장의 도움으로 치료도 받게 되지만 팡틴은 가난 때문에 얻은 질병을 건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딸 코제트도 보지 못한 채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다.</p>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발장은 악인인가? 선인인가?(사법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에서) - 장발장이 회심하기까지의 과정과 미리엘 주교의 역할 - 팡틴에게 인권이 있었나? - 팡틴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가? • 실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레미제라블>을 활용(2019년 개봉)할 수 있습니다. <p>팡틴에게는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일자리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고용 안정),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권리, 참정권,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진료받을 권리가 없었다. 팡틴에게 인권이 없었다는 건 단지 불편하거나 남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제 생명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다.</p>

대상	세부내용
	<p>만약 19세기 초의 프랑스 사회가 미혼모(비혼모)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그래서 팡틴이 미혼모에 대한 편견 속에서 내쫓기지 않았다면, 그가 함부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가 쫓겨나게 됐을 때 그를 보호해 줄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만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어린 딸 코제트를 악당 여인숙 업자 테나르디에가 아니라 지금의 공공 어린이집처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있었다면, 그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돼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병이 들어 쇠약해진 몸을 맡길 수 있는 무료 공공 의료원이 있었다면, 그때도 팡틴에게 인권이 있었다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딸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p>
아동	<p>그림으로 권리 표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음을 안다.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가지 아동의 권리 목록을 준비한다(아래 목록을 참조한다). -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알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있는지 물어본다. - 한 조에 4명에서 6명의 아이들로 2개 내지 3개의 조로 나눈다. - 각 모둠에게 놀이공간 한쪽 끝 벽에 붙여 놓은 종이 주위에 둘러앉게 한다. - 지도자는 놀이공간 반대편에 자리한다. - 각 모둠원들은 다른 모둠원의 한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모든 권리를 먼저 알아맞힌 모둠이 승자가 된다. - 모둠별로 한 명의 아이를 선정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선정된 아이들은 지도자에게 달려가 아동의 권리 목록 중 1개를 듣는다(이때 다른 아이들이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귓속말로 하거나 권리를 적은 종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아이들은 자기 모둠으로 돌아가서 그 권리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 모둠원들은 어떤 권리를 그리고 있는 것인지 맞춰야 한다. - 권리를 알아내면 다른 모둠원이 지도자에게 달려와 다음 권리에 대해 듣는다. - 모둠 중 한 모둠이 모든 권리를 알아내면 놀이가 끝난다.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모두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 항상 존중되지 않는 권리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 아동권리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으로 표현할 아동의 권리, 학교에 갈 권리, 종교를 가질 권리, 잠잘 곳을 가질 권리, 먹을 수 있는 권리,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놀 권리, 자신을 표현할 권리, 안전할 권리, 휴식할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장애를 가진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대상	세부내용
아동	<p>숫자대로 모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와 소외의 감정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그 실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한다. 아이들은 코끼리처럼, 개구리처럼, 또는 발끝으로, 또는 보폭을 크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 얼마 간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의 수보다 작은 숫자를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면 아이들은 재빨리 그 숫자만큼의 아이들을 포함하는 무리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무리의 일부로 끼지 못한 아이들은 다음 단계(4단계) 활동에서 제외된다. - 각 무리의 아이들에게 서로 옹기종기 모여 서서 지도자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한다. 예시 : 발가락 전부를 잡은 채로 원을 그리고 앉기/ 한 줄로 앉아서 기차놀이하기/ 응원 구호 외치기/ 가장 좋아하는 춤 동작 공유하기 - 이제 각 무리의 아이들에게 서로 옹기종기 모여 서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 예시 : 아이들 모두가 즐기는 운동, 아이들 모두가 하는 활동, 모두가 싫어하는 음식, 무리의 모든 아이 입고 있는 옷의 색 등 - 배제된 아이들을 다시 무리로 불러서 놀이를 계속한다. 무리를 지을 다른 숫자를 사용한다.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할 무리를 찾았을 때의 느낌, 무리에서 거부당했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고 우리 집단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 • 실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집단 내에서 일상적으로 소외당하는 아동이 먼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인 후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 놀이를 하는 동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음악을 활용한다. 놀이를 하는 동안 원한다면 음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중단해 무리를 지을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다.

대상

세부내용

성인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기관을 위한 실천 약속> 만들기 활동

• 목표

-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예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내용

- 정책 중 실제 직원과 관계자가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들어보고 발효한다.

• 실용 지침

- 아동에게 위험할 소지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 숙지하고 그에 대처한다.
-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와 작업장을 계획, 조직한다.
- 아동과 함께 있을 때는 되도록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 어떤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이라도 제기, 논의될 수 있도록 개방적 문화를 조성한다.
- 부적절한 학대 소지가 있는 행위가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채 지나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는다.
- 아동에게 담당 직원이나 관련자의 연락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문제라도 제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아동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허용되지 않는 것과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아동과 함께 논의한다.
- 사적 영역과 업무상 영역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행동 기준을 지킨다.
-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다.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기관을 위한 실천 약속

Do	Don't
ex)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ex) 아동들 앞에서 되도록 한숨을 쉬지 말자.
ex) 아동의 요구사항에 무조건 yes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다.	ex) 아동에게 주의를 줄 때는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ex)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내용
아동 · 성인	<p>인권으로 다시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동화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동화의 내용과 현실에서의 인권 문제와 연결하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등장하는 동화를 떠올려 본다. 헨젤과 그레텔, 콩쥐팥쥐,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선녀와 나무꾼, 여우와 두루미, 개미와 베짚이, 심청전 등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에 등장하는 인권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 동화 속 주인공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동화와 관련해 현실의 인권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 현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 필요한가? -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 하는가? • 실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다른 동화의 주제를 선택해 토론 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경우는 다른 스토리 만들기를 진행 - 네 컷 만화를 통해 주인공이 하고 싶은 말 말풍선 넣기

5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추천 도서



연번	책 제목	작가	출판사	년도
1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전기)	엔스 안데르센	창비	2020
2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	제랄드 게를레	문학동네	2018
3	은하철도 999의 기적	류호선	시공주니어	2007
4	공주의 발	아녜스 드자르트	문학과지성사	2004
5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사계절	2002
6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비룡소	1996
7	수상한 아이가 전학 왔다!	제니 롭슨	뜨인돌어린이	2017
8	바늘 아이	윤여림	나는별	2020
9	내 이름은 뽀뽀롱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시공주니어	2011
10	메리포핀스(기프트 에디션)	파멜라 린든 트래버스	시공주니어	2020
11	아이들의 왕 아누시 코르차크	베티 진 리프턴	양철북	2020
12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비룡소	1999



6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추천 영화

연번	영화 제목	감독	년도
1	우리집	윤가은	2019
2	가버나움	나딘 라바키	2019
3	4등	정지우	2016
4	아무도 모른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2005
5	빌리 엘리어트	스티븐 달드리	2001
6	원더	스티븐 크보스키	2017
7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미미 레더	2001
8	어거스트 러쉬	커스틴 쉐리단	2007
9	어느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2018
10	프리다의 그해 여름	카를라 시몬	2018
11	폴란드로 간 아이들	추상미	2018
12	자전거 탄 소년	장피에르 다르덴	2012
13	플로리다 프로젝트	션 베이커	2018
14	보희와 녹양	안주영	2019
15	메이지가 알고 있었던 일	스콧 맥게히	2014
16	보이후드	리처드 링클레이터	2014

• 유엔 아동권리협약 •

<1조> 아동의 범위

만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차별 안 하기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 아동을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 정부의 할 일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5조> 부모의 지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6조> 생존과 발달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7조> 이름과 국적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 신분 되찾기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9조> 부모와의 이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2조>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조>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5조> 모임의 자유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 사생활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9조> 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조> 가족 없는 아동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조> 입양

우리가 입양돼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2조> 난민 아동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됐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23조> 장애아 보호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24조> 영양과 보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시설 아동 실태조사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 사회보장제도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7조> 적절한 생활수준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28조>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9조> 교육의 목적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0조> 소수민족 아동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아동 노동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 해로운 약물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34조> 성 착취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5조> 인신매매와 유괴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7조> 아동 범죄자 보호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38조> 전쟁 속의 아동

우리는 전쟁 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우리가 학대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IV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아동인권전문가

- 1. 아동학대 예방 연간 사업계획 수립
-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
- 3. 인권소통 촉진 및 작성사례
- 4.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아동인권전문가

1 아동학대예방연간 사업계획 수립



예시 1

연간 사업계획(안)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를 지정하여 시설 내 아동인권을 증진하고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목적

구분	내용	비고
아동학대예방교육	•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의심징후 발견 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	연 1회
아동 및 종사자 인권소통	•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논의 - 종사자(회의, 사례회의, 아동 이슈 논의 등) - 아동(자치회의, 가족회의 등) • 인권소통회의록 작성	월 2회 이상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참여	연 1회 이상

II 추진실적

• 실적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진행시기	비고
아동학대예방교육	1회/5명	1회/5명	100%	2~12월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회/5명	1회/5명	100%	2~12월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종사자 및 아동 인권소통회의	24회	24회	100%	1~12월	결과보고, 회의록
아동인권전문가 심화 교육	1회	1회	100%	7월	교육보고
아동인권전문가 컨설팅 참여	1회	1회	100%	11월	결과보고



• 평가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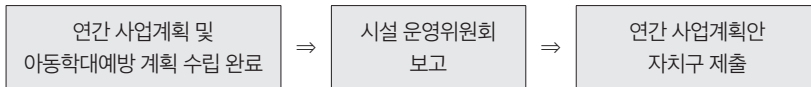
- 지속적인 아동인권 관련 교육을 통해 아동인권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아동인권감수성 향상
- 아동인권소통회의는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종사자 중심이 아닌 아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규칙이 정해지고 있어 이전 보다 아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 변화하고 있는 체계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 잘하고 있는지, 질적인 평가가 미흡함

• 개선사항

- 다양한 교육자료(유튜브, 책, 영화, 외부전문가 초빙 등)를 활용하여 인권소통회의의 실시 예정
- 아동인권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 예정
- 23년 어린이날 시기에 맞춰 시설 내 아동과 종사자의 아동권리옹호 행사 추진하고자 함

III 2023년 연간계획

• 아동학대예방 계획



• 교육운영 계획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각 1회) :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참여
- 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운영계획 수립 : 종사자 및 아동 대상 이슈별 아동인권 교육 실시(상시)

• 회의운영 계획

- 인권소통회의의 운영 : '23.1.~12. 종사자, 아동, 종사자와 아동 간 소통회의의 실시
· 인권소통회의록 작성('23.1.~12. / 월 2회)

• 아동권리옹호 행사

- 2023년 어린이날에 맞춰 시설 내 아동권리옹호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IV 향후 일정

- 2023. 2. : '23.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자치구 보고
- 2023. 3. : 인권소통회의의 결과 자치구 보고(분기별 4회)
- 2023. 6. : 아동학대예방 교육결과 자치구 보고(상·하반기 중 1회)
- 2023. 11. : '24.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수립

예시 2

- 목적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아동인권보호·아동학대예방' 계획을 포함하여 세부 계획 수립함으로써 아동인권 친화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
- 방법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기관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아동 및 직원 대상 인권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이 포함됨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간계획 사례

항목		대상	내용
교육	인권교육	전 아동	연 2회 이상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전 직원	연 2회 이상 아동 인권 및 직원의 권익과 법정업무 안전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 아동	연 2회 이상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전 직원	연 2회 이상 원내·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회의 운영	자치위원회	초등학교 이상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아동 주도적 자치회의의 진행 지원 및 고충처리
	가족회의	초등학교 이상	매월 1회 각 숙소별 가족회의를 통한 인권소통, 생활 속 권리와 의무 배우고 나누기 활동
	인권 소통회의	전 직원	주 1회 이상(직원 주간회의 시) 아동과 직원의 인권 및 권익에 대한 소통회의의 진행 - 별도 회의록 작성
	노사 협의회	전 직원	분기별 연 4회 이상 아동중심적 운영을 위한 노사간의 협의, 직원 고충처리 등 진행
	운영위원회	시설 운영위원	분기별 연 4회 이상 시설 운영위원회 진행 시 인권에 대한 논의 및 보고절차 실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생활지도원 및 일근자	분기별 아동인권과 관련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아동의 인권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인권 진정함	진정함 관리	전 아동 및 전 직원	수시(일일) 담당자 지정을 통한 인권 진정함 관리

출처 : 2021년도 성남보육원 사업계획서 내 '1.인권보호·아동학대예방사업 계획서'의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의 일부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

예시1

목적	우리 시설의 아동과 돌봄노동자를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의식을 향상시킨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 아동 대상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이해하고 아동과 돌봄종사자 모두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함 • 아동과 양육자 모두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고 예방교육의 내실화 도모 		
대상	세 부 내 용	교육 시기	비 고
아동	아동학대 예방교육 • 내용 : 아동학대의 의미, 학대유형, 아동학대 피해 시 처리 절차, 도움 요청 방법 등 • 강사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 ○○○	3월	워크숍 토론 영상교육
	아동인권 및 권리옹호교육 • 내용 : 아동·청소년과 소셜네트워크, 인권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4월, 8월	
	성인권 교육(성폭력 예방교육) • 내용 : 아동 대상 성(性)에 대한 이해 및 성폭력 이해, 대처방법 핸드폰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 • 강사 : 성교육 강사 ○○○	7월	
종사자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 • 내용 :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이해 및 우리시설 행동강령 만들기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연중 1회	영상교육
	아동인권옹호교육 • 내용 : 아동인권과 사례로 본 일상 속 인권감수성 점검 • 강사 : 아동인권 전문강사 ○○○	연중 1회	워크숍, 사례나눔, 실습
	돌봄노동자 소진 예방교육 • 내용 : 돌봄에 대한 소진을 예방하고 양육 스트레스 관리 • 강사 : 그림테라피 강사 ○○○	연중 1회	워크숍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등	연중	사이버교육 (수료증 제출)
	돌봄노동자를 위한 양육 코칭 교육 • 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로 학습하는 양육 코칭 • 강사 : 양육코칭전문강사 ○○○	9월~11월 주 1회 총 10회기	워크숍

아동양육시설 강동꿈마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간계획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예시 2

- 목적 : 기관별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기관 특성에 적합하게 더욱 실효성 있는 최선의 교육으로 운영하도록 권장

• 교육방법 예시

-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
방역정책 준수를 위하여 비대면, 직원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다회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함
- 온라인 교육을 소그룹(4~5명)으로 수강 후 기관에 적용방안을 토의하는 방법
- 외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세부화 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 신고의무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별 수강 후 함께 모여 토의하는 방법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간계획 사례

대상	교육명	세부 내용
아동	아동학대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청소년 대안 온라인 아동학대 피해 예방 교육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중심 '성폭력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례

- 교육명 : 직접 실천해보는 양육 코칭
- 대 상 : 돌봄노동자(종사자)
- 강 사 : ○○○ 교수(○○○대학교)
- 기 간 : 2020. 0~0(주 1회 2시간, 10회 실시)
- 내 용 : 총 10회기
 - 1회기(아동의 기본정보 및 양육에 대한 이력 공유)
 - 2~5회기(아동 중심의 관계 형성 코칭, 실행 연습)
 - 6회기(아동의 행동 지도 기술 코칭, 연습)
 - 7~10회기(아동 행동 지도 코칭, 실행 연습)



본 사례는 아동양육시설 '남산원'에서 돌봄노동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아동 양육 코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돌봄 노동자들이 양육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사례 1 직원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결과 보고서		담당	사무국장	원장
교육명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			
교육종류	국내연수			
교육기간	2020.06.15 ~ 2020.06.15. 09:00~13:00 (1,2부 진행)			
교육장소	강동꿈마을 강당			
교육기관명/강사	세이브더칠드런 / ○○○ 강사			
교육이수시간	총 4시간	교육비		비용 000,000원
1. 교육 내용				
<p>[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 : 아동인권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명 : 세이브더칠드런 - 강사명 : ○○○ 강사 - 대상자 : 강동꿈마을 종사자 29명 - 시간 : 1부 09:00 ~ 11:00, 2부 11:00 ~ 13:00 - 교육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이해 2. 아동안전보호정책이행단계 3. 실습 / 행동강령 만들기 4. 사례나눔 				
2. 교육 결과				
<p>1.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배경 : 전 세계 아동구조 및 국제단체의 “아동안전보호의 기준” (2003) - 국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2014) 법적장치 마련 <p>2. 아동안전보호정책이행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아동착취, 방임유기 - 예방 : 정책수립과정 / 기획, 작성, 승인, 발간 책임과 역할부여 /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지정, 채용과 계약, 직원의 행동강령, 교육과 훈련, 아동참여 활동 - 보고 및 대응 : 신고의무자역할 및 응급조치 - 아동안전보호정책 모니터링 <p>3. 실습 / 행동강령 만들기</p> <p>예) 우리시설 내 직원의 행동강령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과 이야기할 때 손에 허리를 대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말하지 않는다. - 말없이 빨리 쳐다보며 한숨짓지 않는다. - 식사 시 잔반을 모두 먹도록 지켜 앉아 강요하지 않는다. - 아동의 낯은 물건을 버려야 할 경우에는 아동에게 말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 아동의 동의를 얻는다. 				
<p>아동양육시설(강동꿈마을)에서 실시한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 및 근거자료입니다. 서식과 작성방법은 기관 서식입니다.</p>				

참여자들이 함께 작성한 '아동안전보호정책 행동강령, 활동내용'

아래의 자료는 아동양육시설(강동꿈마을)에서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 실시 이후 종사자들이 만든 강동꿈마을의 아동안전보호정책 행동강령입니다.

행동강령	
1	아동들 앞에서 되도록 한숨을 쉬지 말자.
2	되도록 아동을 별명(애칭)으로 부르지 않는다.
3	차별하지 않는다.
4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5	아동의 욕구사항에 무조건 yes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다.
6	때로는 친구처럼~
7	아동에게 주의를 줄 때는 너무 큰 목소리로 하지 않는다.
8	아동과 이야기 할 때는 눈을 보고 이야기 한다.
9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한다.
10	아동 훈육 시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 한다.
11	화내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한다.
12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더라도 의견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잊지 않게.
13	아동들 차이를 인정해주고 차별하지 않고 각각의 주제로 존중해준다.
14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응시하거나 팔짱을 낀 상태로 지도하지 않는다.
15	식사지도 시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16	아동들이 오고가는 공간에서 무심코 아동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17	여러 아동들이 있는 곳에서 한 친구만을 유독 두드러지게 칭찬하지 않는다.
18	아단을 치는 지도보다 혼내지 않고, 넘기는 일이 없는지 점검해본다.
19	다툼이 있었던 아동들에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는 서로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본다.
20	아이와 말할 때 공감하는 말로 대한다.
21	외출 시 어린 아동들은 손을 잡고 가되 큰 길가에서는 안쪽으로 이동시켜 함께 걷는다.
22	아동의 생활공간에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23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 행동에 '수고했어', '고마워', '괜찮아', '다음에는 조심하자' 등 따뜻한 말로 대한다.
24	때로는 서로에게 존대의 말로 표현해 본다.
25	가끔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본다.
26	좋아하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 구분 없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느껴본다.



3 인권소통 촉진 및 작성사례

예시1

킹스키즈그룹홈은 영유아 전담 그룹홈으로 영유아들과 돌봄노동자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영상, 도서 등을 통해 인권소통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소통' 주제를 인권과 관련하여 아동권리, 성평등, 성인지, 성폭력 예방, 안전, 장애인식개선 등 다양하게 접목하였습니다.

구분	아동		종사자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육주제	세부내용
1월	인권교육 (1시간)	어린이인권도서 <새로운 가족>을 읽고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인권소통 (1시간)	<안전이 최우선이다 4부 - 성평등 사회의 시작, 학교> 영상 감상
	인권소통 (1시간)	가족회의를 통해 서로를 칭찬하기	인권소통 (1시간)	아동인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2월	인권교육 (1시간)	어린이인권도서 <초코곰과 젤리곰>을 읽고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인권소통 (1시간)	<성인지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영상 관람 및 토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권소통 (1시간)	가족회의를 통해 우리집 규칙 만들어보기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1시간)	<우리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 서울시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3월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나쁜비밀이 있어요>를 보고 성폭력 대응방법 인지하기 - 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2시간)	<당신의 신고가 아이들을 지킵니다> - 서울시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인권소통 (1시간)	가족소통회의를 통해 마음소리 들어보기	인권소통 (1시간)	가족회의를 통해 마음소리 들어보기
4월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나답게 너답게 (성인지감수성 향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북클럽	아동학대 예방교육 (2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 -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인권소통 (1시간)	가족소통회의를 통해 마음소리 들어보기	인권소통 (1시간)	아동인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5월	인권교육 (1시간)	<한국장애인개발원, 유아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인권교육 (장애인인식개선) (1시간)	<장애인식개선교육> 함께 하는 일터, 바르게 보는 장애> -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인권교육 (1시간)	교육동화<수잔이 웃어요>를 보고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이해할 수 있다.	인권소통 (1시간)	EBS <모두의 차별>을 보고 성차별에 대해 생각해보기

구분	아동		종사자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육주제	세부내용
6월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킹스키즈그룹홈	인권소통 (1시간)	EBS <자그마한 권리> 영상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인권교육 (1시간)	어린이인권도서<같은 달 아래>를 읽고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인권소통 (1시간)	아동학대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7월	인권교육 (1시간)	서울여성회부설 언니네 작은 도서관 견학. 독서활동	인권소통 (2시간)	영화<그린 북>을 함께 감상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뽀로롱 동화속으로>영상보고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보기 - 젠더북클릿	인권소통 (1시간)	영화 <그린북>의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8월	인권교육 (1시간)	<장애가 있는 친구를 이해해 할 수 있어요> - 킹스키즈그룹홈	인권소통 (2시간)	EBS <시그널, 우리를 구하는 신호>
	인권소통 (1시간)	가족회의를 통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	인권소통 (1시간)	가족회의를 통해 아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
9월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내 몸은 소중한요> - 킹스키즈그룹홈	인권소통 (1시간)	불편 [제4회 성평등콘텐츠대상 수상작]을 감상 후 논의, 젠더온Youtube
	인권교육 (1시간)	아동인권도서<깜장병아리>를 읽고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인권교육 (1시간)	인권교육<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양하게 존엄하게> - 경기도 지식캠퍼스
10월	인권교육 (1시간)	아동인권도서<넌 (안)작아>를 읽고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인권소통 (1시간)	EBS 특집<아동학대 예방프로젝트-세명의 위험한 시각>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기
	인권소통 (1시간)	가족소통회의를 통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기	인권소통 (1시간)	가족회의를 통해 아동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11월	인권교육 (1시간)	인권감수성 향상 <애니메이션 - 장난과 폭력의 차이> - 젠더온 Youtube	인권소통 (1시간)	EBS <평등채널: 있지만 없다> 영상을 보고 성폭력 예방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인권소통 (1시간)	가족소통회의를 통해 마음소리 들어보기	인권소통 (1시간)	아동인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12월	인권교육 (1시간)	세계인권의날 12/10을 맞아 나만의 인권선언문을 만들어 보기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디지털 성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 - 경기도지식캠퍼스
	인권교육 (1시간)	가족회의를 통해 마음소리 들어보기	인권소통 (1시간)	<[성폭력 국민의식개선] 허락>을 보고 이야기나누기 - 경기도 지식캠퍼스



예시 2

- **목적** : 우리 안의 ‘인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기회를 촉진하여 올바른 아동권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인권소통의 개념

아동복지 현장은 이미 다양한 인권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소통을 월2회 이상 정례화하고 기록함으로써 우리안의 성찰을 도모하고 아동인권적인 시설운영 측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권소통’은 교육, 회의, 간담회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 인권소통의 예시

대상	세부 내용
아동, 돌봄노동자 각각 / 아동+돌봄노동자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인권, 아동권리보호, 환경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 - 인권 관련 신문 기사, 동영상 보고 토론하기 • 아동 자치회의, 가족회의 • 사례관리 대상 아동 사례회의 내용 • 인권 진정함 관리 • 인권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 점검

• 인권소통의 사례

- (2020. 10월 1차) 아동 대상 인권 영상 시청 후 토론하기
 - 별별 이야기(낮잠)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도모
 - 유엔인권선언문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학습
- (2020. 10월 2차) 아동 대상 인권 영상 시청후 토론하기
 - 별별 이야기(사람이 되어라)를 보고!
 - 인간의 지능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성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 (2020. 11월 1차) 우리의 일상에서 인권
 - 기존의 친구들이 새로 입소한 친구에게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게 까불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같이 회의함
 - UN세계인권선언문 2조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구별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통해 차별이 우리 가까이 있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약속함



본 사례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동소문행복한스쿨’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센터에 적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사례 1 직원회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설장
일자	2021. 01. 27.(수) 10:00~10:50	작성자	아동인권전문가 ○○○	
주제	아동 자립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참석자	시설장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아동인권전문가) ○○○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시기가 도래한 아동들을 위해, 약 1년 간 그 아동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행해볼 수 있는 것들을 시설장 및 직원들과 우선 의논함 1.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 기술을 습관화 필요성에 대해 의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도 중요하지만 아동과 자유시간, 식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틈틈이 자립 후 식사관리, 의복관리, 방 청소 등 기본적인 것을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에 대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해보기 - 아동이 자립에 대한 생각 또는 계획 등 어떠한지도 이야기 해보는 것이 중요 2. 경제교육(용돈, 생활비 등)에 대해 의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양육자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생활비를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아동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용돈을 받으면 다 써버리거나 부족해서 빌리는 경우가 자주 있음 - 아동이 그룹홈에서 지내는 몇 달 동안 공과금 등을 직접 내보고 자립하여 사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는 것을 아동에게 제안해보기 - 자립관련 교육의 경우 실무자들의 교육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직무회의 때 재논의 필요하나, 우선 아동과 함께 이야기 하여 아동의 생각을 들어보고 자립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방향으로 모색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립을 앞둔 아동과 주 1회 이상 1:1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함께 자립에 대한 생각, 고민 등을 같이 탐색해보기 - 아동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 아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실무자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아동에게도 설명해주기 ▶ 자립을 앞둔 아동 뿐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도 스스로 일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족회의를 열어 자연스럽게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아동양육시설(늘푸른청소년미래)의 사례로 직원회의 시 주제였던 아동의 자립지원의 내용을 '인권소통'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례 2 직원회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설장
일 자	2020. 06. 03.(수) 13:00~14:00	작성자	아동인권전문가 ○○○	
주 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아동지도 점검			
참석자	시설장 ○○○, 사무국장 ○○○, 생활지도사 ○○○, 아동인권전문가 ○○○, 상담사 ○○○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및 자치구 방역지침에 따른 시설 점검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참여 등 학교별 상황 공유 • 시설 내 외부활동 제약으로 아동연령 별 모니터링 공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고생 아동의 경우 개별 핸드폰으로 식사 시간 및 취침시간까지 장시간 이용하는 기간이 길어짐. 식사시간, 취침시간에는 핸드폰 사용 재제시키고자 주의를 주나 아동별로 다르고, 잘 지키지 못해 훈육의 고민이 있음 2. 온라인 수업 집중도도 낮고, 학원을 다녀야하는 학생들 별 개별 방역에 대해 인지시키고 있음 3. 초등학생의 경우 대체적으로 안내와 지도에 따라 잘 따르고 있음. 또래별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선생님이 상황 파악정도 하고, 직접개입은 하지 않고 있음. 아동 간 스스로 화해 함 4. 아동들에게 문화 또는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온라인으로 활동을 찾기 어려움 			
처리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19로 외부활동 제약으로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핸드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대한 양육, 훈육에 대한 어려움 확인 2. 외부활동 제약으로 기존 문화 활동도 제공되지 못하여 이를 대체할만한 문화 또는 체험활동 제공에 대한 고민 확인 <p>< 향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사용에 대해 아동과 함께 자치회의를 열어 아동연령 별 사용시간을 정하거나 규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 ▶ 초등학생 및 연령별 참여 가능한 온라인 문화 활동 콘텐츠를 찾아 다음 회의 때 공유 및 논의 하기로 함 			

아동양육시설(강동꿈마을)의 사례로 ‘인권소통’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시설점검’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논의를 통해 향후 계획까지 일괄되게 모색한 것이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례 3 직원회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 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설장
일 자	2020. 05. 02 ~ 05. 08	작성자	아동인권전문가 ○○○	
주 제	아동 및 종사자 모니터링 관련 논의			
참석자	국장 ○○○, 아동인권전문가 ○○○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지도방향이 잔소리와 지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 아동들이 자주 드나드는 사무실이나 식당, 많은 아동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동관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 - 애정이 담긴 질책이라 하더라도 아동과 충분한 신뢰가 없는 경우 부정적인 질책으로 받아들임 - 종사자의 아동서비스 수행 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직업윤리와 인격에 대한 부분 점검 필요. 반복적인 패턴으로 고착화 우려됨 - 종사자 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는 아동에게 건강한 어른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 아동을 노출시킬 수 있음 - 아동과 아동, 아동과 종사자, 종사자와 종사자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며 매우 중요함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장, 아동인권전문가 : 아동과 종사자 대상 질적인 인권교육 계획 논의, 추후 직원 교육계획 반영 예정 ▶ 내주 종사자 교육 관련 구체화된 사례회의 진행 예정 			

아동공동생활가정(강동꿈마을)에서 '인권소통'의 일환으로 직원회의에서 아동 및 종사자 모니터링을 한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원교육을 계획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례 4 자치회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설장
일 자	2021. 03. 05(금) 11:00~12:00	작성자	아동인권전문가 ○○○	
주 제	세계 인권의 날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집의 인권의 날을 정해보기			
참석자	그룹홈 아동 전원, 시설장 ○○○, 인권전문가 ○○○, 생활복지사 ○○○ (총 10명)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자치회의를 통해 '인권'의 의미 논의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인권 및 세계인권의 날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력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찾아보고 의미와 왜 만들어졌는지 등을 학습함 2. 세계 인권 선언문을 함께 읽어봄 • '우리 그룹홈의 인권의 날' 정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및 양육자간 서로의 인권 존중 방법 논의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라고 하지 말고 서로 이름을 부른다 - 이모에게 반말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2. 우리 집의 인권의 날 제정과 인권선언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집은 모두가 평등하다.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함께 공동으로 수행한다 - 신발정리는 각자 스스로 한다 - 핸드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지킨다 			
처리 결과	<p><향후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선언문을 아이들이 제작하여 스스로 거실에 부착하게 하고, 자치회의를 통해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함 2. 우리 집의 인권의 날 및 선언문에 맞는 월별활동을 직원회의의 통해 추가 논의하기 함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인권소통'의 일환으로 자치회의를 진행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사례 5 사례회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설장
일자	2020. 05. 16 ~ 05. 22	작성자	아동인권전문가 ○○○	
주제	○○○ 아동 (모바일 사용, 아동증상 관련 치료적 개입)			
참석자	○○ 원장, ○○○국장, 아동인권전문가 ○○○ ○○○ 생활지도원			
논의 내용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페이스북)을 통한 불특정 다수와의 대인관계 몰입 및 만족감 추구 - 상담사 소견 : 작년 10월부터 우울증약 복용, 성에 대한 지나친 몰입이나 기분 고양, 판단력 및 현실감이 없는 아동의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우울증에서 조증상태로 보여져 정신과 진료가 시급함 <p>* 정신과 진료(주치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상황 요인이 많았는데 시설에서 긴급히 초기 대응을 잘했다 - 청소년기 우울증에서 조증삽화 보임, 약물변경, 지속적 증상관찰을 통해 추후 약물 조정 예정 - 휴대폰을 통해 이탈위험 높아 보호자 관리 필요 			
처리 결과	<p>▶ 숙소 및 기관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보다 아동이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숙소 및 기관의 관심 필요 - 이탈위험 높아 위험상황 요인 원천봉쇄 필요 			

아동양육시설(강동꿈마을)에서 '인권소통'의 일환으로 진행한 아동사례회의 기록의 일부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제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정신과적 진료가 시급한 아동에 대해 개입계획을 논의하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사례 6 사례회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재	기록자	아동인권 전문가
일 자	2021. 03. 02.(화) 10:00~10:40	작성자	○○○	
주 제	아동학대예방교육 계획에 대한 생활복지사 의견 수렴			
참석자	시설장 ○○○, 아동인권전문가 ○○○, 생활복지사 조○○,김○○,양○○(총5명)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아동양육과 관련한 이슈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복지사 조00 : 아동 000의 약물치료 효과가 없어 양육에 어려움이 수시로 발생, 공격적 행동으로 타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정도임 - 생활복지사 김00 : 아동 000의 친부가 수시로 전화를 하여 아동과 통화하기를 원함. 반면 아동은 통화하기를 꺼려함. 생활복지사로서 어떻게 중재 또는 개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움 - 생활복지사 양00 : 아동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함. 이에 늦은 시간에 잠들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행동이 잦아지고 있음. 어떻게 훈육해야할지 고민이 됨 • 아동 양육 시 수반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한 훈육법에 대한 수퍼비전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함. 이에 대한 직원교육에 모두 동의하고 아동인권전문가가 강사섭외 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함 <p>☞ 주요논의 내용, 역할분담, 향후 일정계획 등을 간략히 기술</p>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방법 교육이 필요함 • 직원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올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주제 : 대안적 훈육 - 강사 : 00대학교 00 교수 - 일정 : 2021. 6월 2회에 걸쳐 진행 예정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의 표준 서식에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별도의 서식을 제시한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선과 서식의 양식은 기관실정에 맞게 변형은 가능하나 일시, 주제, 참석자, 주요내용, 그후의 반영계획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7 직원교육 계획논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 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설장
일 자	2020. 06. 01 ~ 06.07	작성자	아동인권전문가 ○○○	
주 제	종사자 모니터링 의견			
참석자	국장 ○○○, 아동인권전문가 ○○○			
논의 내용	<p>* 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문제행동빈도와 양육자별 근무리 상관성 - 아동의 돌발행동 관련 예) 미취학 아동의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행동 : 아동의 심리적진단, 내면상태 이해 필요 - 외부 후원자 및 봉사자 피드백 경청 요구됨 - 기관 및 숙소 내 SNS사용 관련 개입지도 : 기관 내 통합된 하나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아동 사례별 유연성 있는 개입 필요 - 무엇보다 양육지도 종사자의 유해매체 이해와 아동지도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처리 결과	<p>▶ 종사자 교육 : 아동인권옹호교육 1회기(가제) : 아동청소년과 SNS, 우리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섭외중 			

아동양육시설(강동꿈마을)에서 '인권소통'의 일환으로 직원교육 계획 수립을 하기위해 진행한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례 8 사례회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설장
			※ 기관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일자	22. 04. 28.(목)	작성자	아동인권전문가 김○○	
주제	아동관련 뉴스 - 위기청소년 10명 중 4명, 부모에게 폭력·학대 경험			
참석자	종사자 - 김○○, 이○○, 박○○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내용 : (22. 4. 28. 아시아경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발표. 위기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경험. 위기 청소년 중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폭력(44.4%), 언어폭력(46.0%)을 경험한 비율이 절반. 쉼터 등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 신체폭력(72.1%)과 언어폭력(72.9%) 피해경험이 더 높았음. 가족과의 갈등(70.6%)이나 폭력(49.4%)과 같은 가족문제를 겪은 비율이 훨씬 높았음 • 논의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사회적인 안정망인 시설 내에서 안정감을 얻고 회복을 돕도록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됨 -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3명 중 2명은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음 -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훈육과 양육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할 것 같음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도서를 선정하고 토론하기로 함. 도서 선정은 이대 한 선생님께서 5월 첫주까지 해주기로 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과정 교육 (보호아동 양육사례별 개입방법 활용, 아동 지도 등)을 신청하여 수강하기로 함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의 표준 서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별도의 서식을 제시한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선과 서식의 양식은 기관 실정에 맞게 변형은 가능하나 일시, 주제 참석자, 주요 내용, 그 후의 반영계획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9 사례회의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결
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 설 장

※ 기관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일 자	22. 06. 22.(수)	작성자	아동인권전문가 이○○
주 제	아동 지도 및 상담 : 아동 간 갈등 상황 개입 및 조치		
참석자	종사자(이00), 아동 3명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간 갈등 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A와 B가 간식 시간에 필요 없는 스킨쉽과 귓속말로 다른 아이들을 불편하게 함 - 아동A가 장난감(스퀴시)을 아동C 얼굴에 맞추며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를 줌 • 지도 및 상담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상황 및 공격적인 행동 발견 즉시 상황을 중단시킴 - 아동A, B를 각각 별도 공간에서 상담하며 생활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아동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아동C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 함 - 모든 아동 대상으로 상호 존중하는 생활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안내함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자치회에서 상호 존중을 위한 규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규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종사자는 아동 간 관계를 좀 더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기로 함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의 표준 서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별도의 서식을 제시한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선과 서식의 양식은 기관 실정에 맞게 변형은 가능하나 일시, 주제 참석자, 주요 내용, 그 후의 반영계획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

- **목적** :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사례 발견 시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필요시 피해 아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수행시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생계·보호·발달의 책임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인권 감수성을 갖고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자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 수행방법

- 기관 내 아동학대 발견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즉각적으로 경찰(112)에 신고
- 시설 이용아동 중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적으로 경찰(112)에 신고
- 아동학대 관련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사례

- **개요** : 연고자의 주취(전화 통화)로 인한 정서 학대 발생,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후 접근금지 명령 처분
- **기간** : 2020.4~2021.1
- **진행과정** : 아동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 호소를 확인한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면담 후 신고 의뢰, 112신고
- **세부내용**
 - 입소 전부터 지속되어 온 아동학대 행위자의 언어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
 - 부친의 항의전화 및 아동 대상 학대 행위 지속
 - 피해아동을 위한 '주민등록열람 금지신청'
 - 아동학대 행위자의 기관 급습, 아동을 만나겠다고 하여 경찰 동석하에 아동과 친부의 만남을 주선함. 아동이 직접 친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상황 종료
- **결과**
 - 매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유선으로 언어폭력을 하는 것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상세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원활한 협업관계 개선이 필요함

본 사례는 아동양육시설의 실제 사례로, 아동과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동인권전문가 행정서식

붙임1

업무처리 흐름도

시 설	시설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사업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시기 : '22.11.~12월 - 아동인권보호 아동학대예방 계획 포함 - 기관 운영위 보고 <p style="text-align: right;">붙임2 참조</p>	<p>매해 1월~2월 소관 자치구 제출</p>	<p>매해 2월말 서울시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붙임3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이상 - 교육, 회의, 간담회 형태 <p style="text-align: right;">붙임4·5 참조</p>	<p>상·하반기 중 1회 소관 자치구 제출 (매해 6·12월)</p>	<p>상·하반기 서울시 제출 (우수사례 포함) (매해 6·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붙임6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소통회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2회 이상 - 교육, 회의, 간담회 형태 - 반드시 기록할 것 <p style="text-align: right;">붙임7 참조</p>	<p>분기별 소관 자치구 제출 (매해 3·6·9·12월)</p>	<p>분기별 서울시 제출 (매해 3·6·9·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붙임8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전문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변동, 퇴사자 발생 시 <p style="text-align: right;">붙임9 참조</p>	<p>변동시마다 소관 자치구 제출</p>	<p>매월 말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붙임10 참조</p>

※ 시설장은 아동인권전문가 수당지급 시 아동인권전문가 활동내역(아동학대예방교육, 인권소통회의 등) 확인



붙임2

시설용

연간 사업계획(안)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추진방법

※ 사업계획(안)에 연간 아동학대예방 계획 포함,
양식은 시설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II '22. 추진실적

- 실적
- 평가 및 문제점
- 개선사항

III '23. 연간계획

- 아동학대예방 계획
- 교육운영계획
 - 인권교육 운영계획
 - 아동학대예방 교육 운영계획
- 회의운영계획
 - 자치위원회 운영계획
 - 가족회의 운영계획
 - 인권소통회의 운영계획
 - 노사협의회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 자가점검계획
 - 자가점검 실시계획
 - 진정함 관리계획
- 기타계획

IV 향후일정

- 2023. 2. : '23.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자치구 보고
- 2023. 3. : 인권소통회의 결과 자치구 보고(분기별 4회)
- 2023. 6. : 아동학대예방 교육결과 자치구 보고(상·하반기 중 1회)
- 2023. 11. : '24.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수립 현황 제출

- 자치구명 :
- 시설현황 : 총○○개(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 실시결과 : 총○○개 수립(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연 번	시설명	시설 구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수립유무		미수립 사유	운영위 보고유무	미수립 시 수립 예정일자
			수립	미수립			
		양육 시설	○			○/X	
		공동 생활 가정					

※ 시설에서 제출하는 계획서는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엑셀로 작성할 것



붙임4

시설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획서		결재	아동인권 전문가	사무국장	시설장
			※ 기관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 목적	• 우리시설의 아동과 돌봄노동자를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의식을 향상시킨다.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 아동대상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이해하고 아동과 돌봄종사자 모두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함 • 아동과 양육자 모두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고 예방교육의 내실화 도모 				
대상	세부내용	교육시기	교육방법		
돌봄 노동자 (종사자)			(워크숍, 토론, 영상 교육 등)		
아동					

<h2 style="margin: 0;">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보고서</h2>		결 재	아동인권 전문가	사무국장	시 설 장
			※ 기관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input type="checkbox"/> 교육명					
<input type="checkbox"/> 교육종류					
<input type="checkbox"/> 교육일시(시간)					
<input type="checkbox"/> 교육장소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명(강사)					
<input type="checkbox"/> 교육이수시간 : 총		시간	강사비 :	원	기타비용 : 원
<input type="checkbox"/> 교육내용					
<input type="checkbox"/> 교육결과					



붙임6

자치구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현황 제출

- 자치구명 :
- 시설현황 : 총○○개(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 실시결과 : 총○○개 수립(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연 번	시설명	시설 구분	실시	미실시	미실시 사유	미실시 시 실시 예정일자
		양육 시설	○			
		공동 생활 가정				

※ 시설에서 제출하는 교육 결과보고서는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엑셀로 작성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p>		결 재	아동인권 전문가	시 설 장
			※ 기관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일 자		작 성 자	아동인권전문가 〇〇〇	
주 제				
참 석 자				
논의내용				
향후계획				



붙임8

자치구용

인권소통회의 실시현황 제출

- 자치구명 :
- 시설현황 : 총○○개(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 실시결과 : 총○○개 수립(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연 번	시설명	시설 구분	실시	미실시	미실시 사유	미실시 시 실시 예정일자
		양육 시설	○			
		공동 생활 가정				

※ 시설에서 제출하는 인권소통회의 결과보고서는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엑셀로 작성할 것

아동인권전문가 운영 현황

- 시설명 :
- 운영현황(변동이 없는 경우 작성)

성 명	지정일자	연 락 처		이메일
		사무실	핸드폰	

- 시설명 :
- 변동현황(기 지정된 아동인권전문가가 다른 직원으로 변경 지정시 작성)

당 초		변 경				
성 명	변경사유	성명	지정일자	사무실전화	핸드폰	이메일
	ex) 퇴사 등					

- 시설명 :
- 신규 및 임시 지정현황
(기 미지정 시설에서 신규 지정하거나 적격자가 없어 시설장이 임시역할 수행시 작성)

성 명	신규지정 일자	연 락 처		이메일	비고
		사무실	핸드폰		
					시설장
					종사자



붙임10

아동인권전문가운영현황

자치구용

- 자치구명 :
- 시설현황 : 총○○개(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 실시결과 : 총○○개 수립(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연번	시설명	시설 구분	운영현황				변경현황				신규 및 임시지정현황							
			성명	지정 일자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성명	지정 일자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성명	지정 일자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비고
		양육 시설																시설장
		공동 생활 가정																종사자

※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 작성방법

- 운영현황 : 기 지정된 아동인권전문가가 변동이 없는 경우 작성
- 변경현황 : 기 지정된 아동인권전문가가 다른 직원으로 변경 지정시 작성
- 신규 및 임시 지정현황 : 미지정 시설에서 아동인권전문가를 신규 지정하거나, 적격자가 없어 시설장이 임시역할 수행시 작성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https://edu.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2018). 사이버 인권교육 보조교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2019). 인권의 이해-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
- 국가인권위원회(202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21). 놀이로 배우는 인권 Play It Fair!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4)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과 이행방법.
-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9) 세상의 모든 아동과 조력자를 위한 친절한 가이드북.
- 김희진 (2019). 존중받고 존중하는 영혼을 위한 아동인권. 파주: 푸른들녘. (pp15~30).
- 보건복지부 (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초등학교 교사용.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4). 20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 사회보장정보원 (2020). 2020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9).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2.
- 서하아 (2019). 유아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유아교육기관의 조직문화가 유아권리존중에 실행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에 대한 약속, 행동강령.
- 신영금 (2017).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인권감수성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홍욱 (2003. 6. 9).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경향신문.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백서.
- 이민지 (2017). 유아교사의 아동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인권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 이명목, 안경순, 정경은, 정민기 (2005).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2018), 인권교육 새로고침.
- 조영주 (201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인식하는 아동인권과 문제행동이 지도방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 라인 자료집.
- 황옥경, 이은주, 구은미, 김형욱 (2017). 아동청소년과 인권. 파주:나남.
- The global fund for children(2014), 「Children protection manual」.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북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발행일 2022.11
디자인 행복드림